

고 시**●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- 209호****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**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6-389호(2016. 6.29)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의왕초평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관계서류는 경기도 의왕시청 도시개발과(031-345-2802)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(031-250-8275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(<http://luris.molit.go.kr>)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

2017년 4월 10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□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**1. 지구계획의 개요**

가. 명 칭 :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

나. 위 치 :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, 삼동 일원

다. 면 적 : 387,443㎡

라.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

-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

2.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

가. 명 칭 : 한국토지주택공사

나. 소재지 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

다. 대표자 성명 : 박 상 우

3.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

가. 사업기간 : 2016. 6. 29 (지구지정 고시일) ~ 2020. 12. 31 (준공 예정일)

나. 재원조달 계획 :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

4. 토지이용계획

구 분		면적(m ²)	구성비(%)	비고	
총 계		387,443	100.0		
주택건설 용지	합 계	151,358	39.0		
	공동 주택	소 계	132,307	34.1	
		기업형임대	111,732	28.8	
		공공임대	5,284	1.4	
		분양	15,291	3.9	
	단독주택	17,139	4.4		
	근린생활시설	1,912	0.5		
판매· 업무시설 용지	합 계	44,368	11.5		
	상업시설	6,194	1.6		
	자족시설	38,174	9.9		
기반시설 용지	합 계	190,165	49.1		
	공원· 녹지	소 계	80,646	20.8	
		공원	46,205	11.9	4개소, 저류시설(4,711m ²) 중복결정
		녹지	34,441	8.9	11개소
	하천	27,933	7.2	2개소	
	도로	소계	65,551	16.9	25개소
		도로	63,954	16.5	18개소, 하천중복면적(1,850m ²) 포함
		보행자 전용도로	1,597	0.4	7개소
	주차장	2,535	0.7	2개소	
	교육 시설	소 계	13,500	3.5	
		초등학교	12,506	3.2	1개소
유치원		994	0.3	1개소	
기타 시설용지	합 계	1,552	0.4		
	주유소	1,552	0.4	1개소	

5. 개략설계도서 : 게재생략

6. 인구·주택 수용계획

가. 계획인구 : 7,316인

나. 주택건설계획 : 3,007호(단독주택 64호, 공동주택 2,943호)

구 분	면 적(m ²)	수용세대(호)	수용인구(인)	비 고	
합 계	149,446	3,007	7,316		
단 독 주 택	17,139	64	160		
공 동 주 택	132,307	2,943	7,156		
	60m ² 이하	72,109	1,797	4,290	
	A-1	31,205	734	1,835	기업형임대
	A-3	35,620	838	2,095	기업형임대
	A-4	5,284	225	360	공공임대
	60m ² ~ 85m ²	60,198	1,146	2,866	
	A-2	44,907	855	2,138	기업형임대
	B-1	15,291	291	728	일반분양

7. 교통·공공·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

가. 도로계획

류 별	합 계			1 류			2 류			3 류		
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㎡)
합 계	25	4,137	65,551	8	1,928	31,056	4	551	9,304	13	1,658	23,060
광 로	-	-	-	-	-	-	-	-	-	-	-	-
대 로	2	634	15,098	-	-	-	1	93	2,723	1	541	12,375
중 로	8	2,327	38,597	2	1,049	23,013	3	458	6,581	3	820	9,003
소 로	15	1,176	9,725	6	879	8,043	-	-	-	9	297	1,682
가각 및 버스정차대등	-	-	2,131	-	-	-	-	-	-	-	-	-

나. 주차장계획

구 분	번호	위 치	면 적(㎡)	비 고
계	-	-	2,535	
주차장	1	초평동 48 일원	1,032	노외주차장
	2	초평동 31-13 일원	1,503	

다. 공원계획

구 분	번호	위 치	면 적(㎡)	비 고
계	-	-	46,205	총 4개소
근린공원	1	초평동 55-3 일원	25,874	저류시설 1개소(4,711㎡)포함
	2	초평동 19-1 일원	14,234	
어린이공원	1	초평동 53-1 일원	1,608	
소 공 원	1	삼동 481-47 일원	4,489	

라. 녹지계획

구 분	번호	위 치	면 적(m ²)	비 고
계	-	-	34,441	
완충녹지	1	초평동 25-25 일원	2,451	
경관녹지	1	초평동 52-1 일원	336	
	2	초평동 51-1 일원	1,807	
	3	초평동 52-2 일원	425	
	4	초평동 54 일원	3,413	
	5	초평동 55-7 일원	1,144	
	6	초평동 76 일원	3,197	
	7	초평동 63 일원	9,449	
	8	초평동 25-54 일원	10,193	
	9	초평동 16 일원	831	
	10	초평동 25 일원	1,195	

마. 교육시설계획

구 분	번호	위 치	면 적(m ²)	비 고
계	-	-	13,500	
유치원	1	초평동 52-2일원	994	
초등학교	1	초평동 57-3일원	12,506	

바. 하천계획

구 분	번호	위 치	면 적(m ²)	비 고
계	-	-	27,933	
소하천	1	초평동53-3번지 일원	20,136	소하천(신촌천) 도로 중복면적(1,091m ²) 제외
	2	삼동 552-20번지 일원	7,797	소하천(금천천) 도로 중복면적(759m ²) 제외

사. 유수지계획

구 분	번호	위 치	면 적(m ²)	비 고
계	-	-	4,711	
저류시설	1	초평동 19-1일원	4,711	근린공원2 내 중복결정

8.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

1) 환경보전 계획

○ 녹지 확보

- 생태환경과 공원녹지의 접목하여 공원녹지 계획하고, 다양한 규모와 기능의 생물 서식공간 마련

○ 친수공간 확보를 통한 생태순환도시 조성

- 하천을 활용한 친수공간 확보
 - 수변으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친수성을 갖춘 단지로 개발
- 우수의 침투 및 저류
 - 빗물 지표면 흡수유도 및 저류시설을 이용한 우수유출 저감

2) 탄소저감 계획

○ 에너지 효율화

- 고효율 조명기기 사용, 단열 강화 등 에너지효율화

○ 신재생에너지 활용

-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신·재생에너지(태양광, 태양열, 지열 등)의 적용을 권장

○ 저탄소·에너지 절약형 교통체계 구축

- 버스이용 원활토록 대중교통 체계 마련 및 보행·자전거 네트워크 구축

9.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: [붙임] (도면게재생략)

[붙임]

1. 도시·군관리계획

가.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

1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(변경없음)

구분	도면표시 번호	구역명	위 치	면 적 (㎡)			비 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
기정	-	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	경기도 의왕시 초평동, 삼동 일원	387,443	-	387,443	국토교통부고시 제2016-389호 (2016.6.29)

2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: 게재생략

나.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	면 적(㎡)			구성비(%)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총 계		387,443	-	387,443	100.0	
주거 지역	소 계	-	증) 241,786	241,786	62.4	
	일 반 주 거 지 역	-	증) 191,309	191,309	49.4	
	제1종일반주거지역	-	증) 27,021	27,021	7.0	
	제2종일반주거지역	-	증) 164,288	164,288	42.4	
	준 주 거 지 역	-	증) 50,477	50,477	13.0	
녹지 지역	소 계	387,443	감) 241,786	145,657	37.6	
	자 연 녹 지 지 역	387,443	감) 241,786	145,657	37.6	

■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위 치	용도지역		면적(㎡)	용적률	결정(변경)사유
		기정	변경			
-	의왕시 초평동 일 원	자연녹지지역	제1종 일반주거지역	27,021	지구단위계획 에 의함	○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
		자연녹지지역	제2종 일반주거지역	164,288	지구단위계획 에 의함	○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
		자연녹지지역	준주거지역	50,477	지구단위계획 에 의함	○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

다. 용도지구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지구명	지구의세분	위 치	제한 내용	면 적 (㎡)	최 초 결정일	비 고
폐지	23	계림	집단취락지구	초평동 40-1 일원	-	-	경고 제2005-223호 (2005.7.25)	
기정	25	윗새우대	집단취락지구	초평동 253-1 일원	-	18,810	경고 제2005-223호 (2005.7.25)	
변경	25	윗새우대	집단취락지구	초평동 253-1 일원	-	15,787	경고 제2005-223호 (2005.7.25)	

■ 용도지구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지구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23	계림	○ 폐지 -위치 : 초평동 40-1 일원	○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내 편입으로 집단취락지구 폐지
25	윗새우대	○ 변경 -위치 : 초평동 253-1 일원 -면적 : 18,810㎡ → 15,787㎡(감 3,023㎡)	○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내 일부편입부분 집단취락지구 해제

라.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조서

1) 교통시설

가) 도로

■ 도로 총괄표

류 별	합 계			1 류			2 류			3 류		
	노선 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 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 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 수	연장 (m)	면적 (㎡)
합 계	25	4,137	65,551	8	1,928	31,056	4	551	9,304	13	1,658	23,060
광 로	-	-	-	-	-	-	-	-	-	-	-	-
대 로	2	634	15,098	-	-	-	1	93	2,723	1	541	12,375
중 로	8	2,327	38,597	2	1,049	23,013	3	458	6,581	3	820	9,003
소 로	15	1,176	9,725	6	879	8,043	-	-	-	9	297	1,682
가각 및 버스정 차대등	-	-	2,131	-	-	-	-	-	-	-	-	-

■ 도로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규 모				기 능	연 장 (m)	기 점	종 점	사 용 태	주 요 경과 지	최 초 결정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신설	대로	2	1	32	보조간선도로	93	초평동 50-1	대3-1	일반도로	-	-	
신설	대로	3	1	20~30	보조간선도로	541	중1-101	초평동 256-6	일반도로	-	-	
기정	중로	1	101	20~26	보조간선도로	1,190	대2-1	중3-102	일반도로	-	건교부 고시 제179호 (1998.6.10.)	지구 외
변경	중로	1	101	20~26	보조간선도로	966	대2-1	초평동 481-5	일반도로	-		
신설	중로	1	1	23	집산도로	367	대3-1	초평동 78-3	일반도로	-	-	
신설	중로	1	2	23~26	집산도로	682	대3-2	중2-1	일반도로	-	-	
신설	중로	2	1	15.5	집산도로	272	대3-1	초평동 52-2	일반도로	-	-	
신설	중로	2	2	16	집산도로	162	대3-1	소3-6	일반도로	-	-	
신설	중로	2	3	16	집산도로	24	초평동 27-7	중3-1	일반도로	-	-	
기정	중로	3	102	12~14	집산도로	2,440	중1-101	초평동 (수원시계)	일반도로	-	의왕시 고시 제50호 (2004.1.29.)	지구 외
변경	중로	3	102	12~14	집산도로	2,123	초평동 256-6	초평동 (수원시계)	일반도로	-		
신설	중로	3	1	12	집산도로	480	대3-1	중2-2	일반도로	-	-	
신설	중로	3	2	12	집산도로	154	중1-1	초평동 93-9	일반도로	-	-	
신설	중로	3	3	12	집산도로	186	중1-1	초평동 산23-3	일반도로	-	-	
신설	소로	1	1	10	국지도로	358	중2-1	중2-1	일반도로	-	-	
신설	소로	1	2	10	국지도로	59	중2-1	소1-1	일반도로	-	-	
신설	소로	1	3	10	국지도로	111	소1-4	소1-2	일반도로	-	-	
신설	소로	1	4	10	국지도로	67	중2-1	소1-1	일반도로	-	-	
신설	소로	1	5	10	국지도로	141	중3-1	소1-6	일반도로	-	-	
신설	소로	1	6	10	국지도로	143	중3-1	소1-5	일반도로	-	-	
폐지	소로	2	187	8	국지도로	237	초평동 41-2	초평동 31-2	일반도로	-	의왕시 고시 제51호 (2005.8.16.)	
기정	소로	2	214	14~15	국지도로	412	소로2-160 초평동산28-18	소로2-188 초평동92-10	일반도로	-	의왕시 고시 50호 (2004.1.29.)	지구 외
변경	소로	2	214	14~15	국지도로	47	소로2-160 초평동산28-18	초평동 산23-1	일반도로	-		
신설	소로	3	1	6	국지도로	13	소1-1	소3-3	일반도로	-	-	
신설	소로	3	2	6	국지도로	13	소1-1	소3-5	일반도로	-	-	
신설	소로	3	3	6	특수도로	10	소3-1	초평동 52-1	보행자 전용도로	-	-	
신설	소로	3	4	6	특수도로	29	소1-1	초평동 51-2	보행자 전용도로	-	-	
신설	소로	3	5	6	특수도로	10	소3-2	초평동 51-2	보행자 전용도로	-	-	
신설	소로	3	6	6	특수도로	35	소2-2	초평동 51-2	보행자 전용도로	-	-	
신설	소로	3	7	5	특수도로	15	중3-1	소1-5	보행자 전용도로	-	-	
신설	소로	3	8	5	특수도로	17	소1-5	초평동 16-7	보행자 전용도로	-	-	
신설	소로	3	9	6	특수도로	155	초평동 25-4	초평동 27-3	보행자 전용도로	-	-	

■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 전 도로명	변경 후 도로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-	대로2-1	○ 신설 -폭원 : 32m, 연장 : 93m	○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 신설
-	대로3-1	○ 신설 -폭원 : 20~30m, 연장 : 541m	○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 신설
중로1-101	중로1-101	○ 변경 -연장 : 1,190m → 966m -종점 : 중3-102 → 초평동 481-5	○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노선 축소
-	중로1-1	○ 신설 -폭원 : 23m, 연장 : 367m	○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 신설
-	중로1-2	○ 신설 -폭원 : 23~26연장 : 682	○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 신설
-	중로2-1	○ 신설 -폭원 : 15.5m, 연장 : 272m	○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 신설
-	중로2-2	○ 신설 -폭원 : 16m, 연장 : 162m	○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 신설
-	중로2-3	○ 신설 -폭원 : 16m, 연장 : 24m	○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 신설
중로3-102	중로3-102	○ 변경 -연장 : 2,440m → 2,123m -기점 : 중1-101 → 초평동 256-6	○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노선 축소
-	중로3-1	○ 신설 -폭원 : 12m, 연장 : 480m	○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 신설
-	중로3-2	○ 신설 -폭원 : 12~14m, 연장 : 154m	○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 신설
-	중로3-3	○ 신설 -폭원 : 12m, 연장 : 186m	○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 신설
-	소로1-1	○ 신설 -폭원 : 10m, 연장 : 358m	○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 신설
-	소로1-2	○ 신설 -폭원 : 10m, 연장 : 59m	○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 신설
-	소로1-3	○ 신설 -폭원 : 10m, 연장 : 111m	○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 신설
-	소로1-4	○ 신설 -폭원 : 10m, 연장 : 67m	○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 신설
-	소로1-5	○ 신설 -폭원 : 10m, 연장 : 141m	○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 신설
-	소로1-6	○ 신설 -폭원 : 10m, 연장 : 143m	○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 신설
소로2-187	소로2-187	○ 폐지	○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 폐지
소로2-214	소로2-214	○ 변경 -연장 : 412m → 47m -종점 : 소로2-188 → 초평동 산23-1	○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노선 축소
-	소로3-1	○ 신설 -폭원 : 6m, 연장 : 13m	○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 신설
-	소로3-2	○ 신설 -폭원 : 6m, 연장 : 13m	○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 신설
-	소로3-3	○ 신설 -폭원 : 6m, 연장 : 10m	○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 신설
-	소로3-4	○ 신설 -폭원 : 6m, 연장 : 29m	○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 신설
-	소로3-5	○ 신설 -폭원 : 6m, 연장 : 10m	○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 신설
-	소로3-6	○ 신설 -폭원 : 6m, 연장 : 35m	○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 신설
-	소로3-7	○ 신설 -폭원 : 5m, 연장 : 15m	○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 신설
-	소로3-8	○ 신설 -폭원 : 5m, 연장 : 17m	○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 신설
-	소로3-9	○ 신설 -폭원 : 6m, 연장 : 155m	○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 신설

2) 공간시설

가) 공원

■ 공원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(m ²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 계				-	-	증) 46,205	46,205		
신설	1	초평1호 소공원	소공원	삼동 481-47 일원	-	증) 4,489	4,489		
신설	1	초평1호 어린이공원	어린이 공원	초평동 53-1 일원	-	증) 1,608	1,608		
신설	1	초평1호 근린공원	근린공원	초평동 55-3 일원	-	증) 25,874	25,874		
신설	2	초평2호 근린공원	근린공원	초평동 19-1 일원	-	증) 14,234	14,234		저류시설 1개소 (4,711m ²) 중복결정

■ 공원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공 원 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1	초평1호 소공원	○ 신설 -위치 : 삼동 481-47 일원 -면적 : 4,489m ² (증 4,489m ²)	○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공원 신설
1	초평1호 어린이공원	○ 신설 -위치 : 초평동 53-1 일원 -면적 : 1,608m ² (증 1,608m ²)	○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공원 신설
1	초평1호 근린공원	○ 신설 -위치 : 초평동 55-3 일원 -면적 : 25,874m ² (증 25,874m ²)	○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공원 신설
2	초평2호 근린공원	○ 신설 -위치 : 초평동 19-1 일원 -면적 : 14,234m ² (증 14,234m ²)	○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공원 신설

나) 녹지

■ 녹지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 면 시 변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적(m ²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 계				-	-	증) 34,441	34,441		
신설	1	녹지	완충녹지	초평동 25-25 일원	-	증) 2,451	2,451	-	
신설	1	녹지	경관녹지	초평동 52-1 일원	-	증) 336	336	-	
신설	2	녹지	경관녹지	초평동 51-1 일원	-	증) 1,807	1,807	-	
신설	3	녹지	경관녹지	초평동 52-2 일원	-	증) 425	425	-	
신설	4	녹지	경관녹지	초평동 54 일원	-	증) 3,413	3,413	-	
신설	5	녹지	경관녹지	초평동 55-7 일원	-	증) 1,144	1,144	-	
신설	6	녹지	경관녹지	초평동 76 일원	-	증) 3,197	3,197	-	
신설	7	녹지	경관녹지	초평동 63 일원	-	증) 9,449	9,449	-	
신설	8	녹지	경관녹지	초평동 25-54 일원	-	증) 10,193	10,193	-	
신설	9	녹지	경관녹지	초평동 16 일원	-	증) 831	831	-	
신설	10	녹지	경관녹지	초평동 25 일원	-	증) 1,195	1,195	-	

■ 녹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 (종류)	변경내용	변경사유
1	녹지 (완충녹지)	○ 신설 -위치 : 초평동 25-25 일원 -면적 : 2,451㎡	○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녹지 신설
1	녹지 (경관녹지)	○ 신설 -위치 : 초평동 52-1 일원 -면적 : 336㎡	○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녹지 신설
2	녹지 (경관녹지)	○ 신설 -위치 : 초평동 51-1 일원 -면적 : 1,807㎡	○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녹지 신설
3	녹지 (경관녹지)	○ 신설 -위치 : 초평동 52-2 일원 -면적 : 425㎡	○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녹지 신설
4	녹지 (경관녹지)	○ 신설 -위치 : 초평동 54 일원 -면적 : 3,413㎡	○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녹지 신설
5	녹지 (경관녹지)	○ 신설 -위치 : 초평동 55-7 일원 -면적 : 1,144㎡	○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녹지 신설
6	녹지 (경관녹지)	○ 신설 -위치 : 초평동 76 일원 -면적 : 3,197㎡	○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녹지 신설
7	녹지 (경관녹지)	○ 신설 -위치 : 초평동 63 일원 -면적 : 9,449㎡	○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녹지 신설
8	녹지 (경관녹지)	○ 신설 -위치 : 초평동 25-54 일원 -면적 : 10,193㎡	○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녹지 신설
9	녹지 (경관녹지)	○ 신설 -위치 : 초평동 16 일원 -면적 : 831㎡	○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녹지 신설
10	녹지 (경관녹지)	○ 신설 -위치 : 초평동 25 일원 -면적 : 1,195㎡	○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녹지 신설

3) 공공·문화체육시설

가) 학교시설

■ 학교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 계				-	-	증) 12,506	12,506	-	
신설	1	학교	초등학교	초평동 57-3일원	-	증) 12,506	12,506	-	

■ 학교시설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 (종류)	변경내용	변경사유
1	학교 (초등학교)	○ 신설 -위치 : 초평동 57-3일원 -면적 : 12,506㎡ (증 12,506㎡)	○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 시행에 따른 초등학교 신설

4) 방재시설

가) 하천

■ 하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		연장 (km)	폭원 (m)	면적 (㎡)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점	종점	주요 경과지					
합 계				-			2,524 (1,208)	-	70,575 (27,933)	-	
기정	14	신촌천	소하천	초평동 53-3	초평동 3-8	-	1,251	21~25	27,126 (19,700)	의왕시 고시 제2015-9호 (2015.1.23)	
변경	14	신촌천	소하천	초평동 53-3	초평동 3-8	-	1,251 (995)	21~25	27,562 (20,136)	의왕시 고시 제2015-9호 (2015.1.23)	
기정	15	금천천	소하천	삼동 552-20	초평동 278-6	-	1,273 (213)	33~60	43,001 (7,797)	의왕시 고시 제2015-9호 (2015.1.23)	

※ () 는 지구 내 편입 연장 및 면적임

■ 하천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 (종류)	변경내용	변경사유
14	하천(소하천)	○ 변경 - 면적 : 27,126㎡(19,700㎡) → 27,562㎡(20,136㎡) (증 436㎡)	○ 제방고 상승에 따른 하폭의 변경

나) 우수지

■ 우수지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 계				-	-	증) 4,711	4,711	-	
신설	1	우수지	저류 시설	초평동 19-1일원	-	증) 4,711	4,711	-	

■ 우수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 (종류)	변경내용	변경사유
1	우수지 (저류시설)	○ 신설 - 위치 : 초평동 19-1일원 (초평2호 근린공원 중복결정) - 면적 : 4,711㎡ (증 4,711㎡)	○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 시행에 따른 우수지 신설

마.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

1) 가구 및 획지구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

가) 단독주택용지

■ 일반 단독주택용지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(m ²)	획지		비고
			위치	면적(m ²)	
총계	-	12,814	-	12,814	획지는 분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획지의 합병은 인접한 2개의 획지에 한하여 허용함
D	D1	783	1	263	
			2	263	
			3	257	
	D2	1,241	1	309	
			2	311	
			3	310	
			4	311	
	D3	3,467	1	323	
			2	324	
			3	324	
			4	324	
			5	307	
6			301		
7			306		
8			312		
9			314		
10			324		
11			308		
D4	4,449	1	304		
		2	309		
		3	329		
		4	339		
		5	344		
		6	340		
		7	322		
		8	298		
		9	304		
		10	315		
		11	326		
		12	317		
		13	316		
		14	286		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(m ²)	획지		비고
			위치	면적(m ²)	
D	D5	1,940	1	278	획지는 분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획지의 합병은 인접한 2개의 획지에 한하여 허용함
			2	278	
			3	281	
			4	278	
			5	275	
			6	275	
			7	275	
	D6	934	1	239	
			2	233	
			3	227	
			4	235	

■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(m ²)	획지		비고
			위치	면적(m ²)	
총계	-	4,325	-	4,325	획지는 분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획지의 합병은 인접한 2개의 획지에 한하여 허용함
D	D7	626	1	303	
			2	323	
	D8	843	1	273	
			2	285	
			3	285	
	D9	825	1	219	
			2	305	
			3	301	
	D10	758	1	248	
			2	247	
			3	263	
	D11	1,273	1	203	
2			216		
3			211		
4			202		
			5	215	
			6	226	

나) 공동주택용지(아파트)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(m ²)	획지		비고
			위치	면적(m ²)	
총계	-	132,307	-	132,307	
A	A1	31,205	-	31,205	
	A2	44,907	-	44,907	
	A3	35,620	-	35,620	
	A4	5,284	-	5,284	
B	B1	15,291	-	15,291	

다) 근린생활시설용지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(m ²)	획지		비고
			위치	면적(m ²)	
총계	-	1,912	-	1,912	획지는 분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획지의 합병은 인접한 2개의 획지에 한하여 허용함
Cn	Cn1	1,912	1	648	
			2	660	
			3	604	

라) 상업시설용지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(m ²)	획지		비고
			위치	면적(m ²)	
총계	-	6,194	-	6,194	획지는 분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획지의 합병은 인접한 2개의 획지에 한하여 허용함
C	C1	4,247	1	1,300	
			2	1,511	
			3	1,436	
	C2	1,947	1	733	
			2	609	
			3	605	

마) 자족시설용지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(m ²)	획지		비고
			위치	면적(m ²)	
총계	-	38,174	-	38,174	획지 분할가능
S	S1	38,174	-	38,174	

바)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

■ 교육시설용지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(m ²)	획지		비고
			위치	면적(m ²)	
계	-	13,500	-	13,500	
E	E1	12,506	-	12,506	
	E2	994	-	994	

■ 주유소용지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(m ²)	획지		비고
			위치	면적(m ²)	
총계	-	1,552	-	1,552	
G	G1	1,552	-	1,552	

■ 주차장용지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(m ²)	획지		비고
			위치	면적(m ²)	
계	-	2,535	-	2,535	
P	P1	1,032	-	1,032	
	P2	1,503	-	1,503	

2) 건축물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가) 단독주택용지(제1종일반주거지역)

■ 일반 단독주택용지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획내용	
-	D1~ D6	용도	허용용도	○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- 제1호 단독주택 (나목 다중주택, 라목 공관 제외)
			불허용도	○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규모	건폐율	○ 50% 이하
			용적률	○ 150% 이하
			높이	○ 3층 이하(필로티 포함)
		1획지당 가구수		○ 6가구 이하
		배치	배치	○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·통풍을 고려하여 배치 ○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「건축법」 및 「의왕시 건축조례」에 의한 기준이상으로 거리를 확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.
			건축선	○ 건축선(건축한계선)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○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「의왕시 건축조례」 별 표3(대지 안의 공지 기준)을 따른다.
		형태 및 외관		○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
		기타		○ 기타 및 세부세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

■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획내용	
-	D7~ D11	용도	허용용도	○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- 제1호 단독주택 (나목 다중주택, 라목 공관 제외) -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(라목 안마원 제외) -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(당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과 가목 공연장, 나목 종교집회장, 마목 총포판매소, 차 목 장의사, 카목 교습소·직업훈련소, 파목 골프연습장, 거목 다중시설, 너목 제조업소, 더목 단란주점, 러목 안마시설소 제외) ○ 근린생활시설 설치규모는 연면적의 40%를 초과할 수 없으며 1층 및 지하1층에 한함(연면적 산정시 지하층 연면적 포함)
			불허용도	○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○ 지하층 주거용도 및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
		규모	건폐율	○ 60% 이하
			용적률	○ 200% 이하
			높이	○ 4층 이하(필로티 포함)
		1획지당 가구수		○ 6가구 이하
		배치	배치	○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·통풍을 고려하여 배치 ○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「건축법」 및 「의왕시 건축조례」에 의한 기준이상으로 거리를 확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.
			건축선	○ 건축선(건축한계선)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○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「의왕시 건축조례」 별표3(대지 안의 공지 기준)을 따른다.
		형태 및 외관		○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
		기타		○ 기타 및 세부세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

나) 공동주택용지(제2종일반주거지역)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획내용		
-	A1~A4 B1	용도	허용용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2호 공동주택 중 가목 아파트 ○ 「주택법」 및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의한 부대시설, 복리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근린생활시설·소매시장·상점을 합한 면적은 세대당 6제곱미터 미만 		
			불허용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○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		
		규모	건폐율	○ 30% 이하	
			용적률	○ 200% 이하	
			높이	○ 아파트 : 25층 이하 (E/L 포함 81m 이하) ○ 「주택법」 및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의한 부대시설, 복리시설 : 5층 이하	
		주택규모 및 세대수	○ <별표1>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.		
		배치	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저층 배치구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교 및 근린공원에서의 전망과 일조를 고려하여 학교 및 근린공원 남측의 공동주택 용지에는 중저층 배치구간을 지정한다. - 세부사항은 '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' 를 따른다. ○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로변과 보행활성화가 필요한 구간에는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을 지정한다. - 세부사항은 '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' 를 따른다. ○ 통경축 반영구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바람통로와 주요 조망요소로의 시각통로를 확보하고 개방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통경축 반영구간을 지정한다. - 세부사항은 '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' 를 따른다. ○ 공동주택용지에 배치되는 모든 주거동은 「건축법」 제61조 및 「의왕시 건축조례」 제36조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준용하여 일조를 확보한다. ○ 교육환경영향평가의 건축조건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교육지원청에 통보한다. 	
				건축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축선(건축한계선)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○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「의왕시 건축조례」 별표3 (대지 안의 공지 기준)을 따른다.
		-	A1~A4 B1	형태 및 외관	○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
				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 지침이 규정하는 일부 내용이 제영향평가(환경, 교통, 재해), 교육환경평가, 에너지사용계획 등 본 계획과 관련하여 협의완료, 승인된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. ○ 기타 및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

< 별표 1 > 공동주택용지의 규모·용적률·세대수·높이

구분			면적 (㎡)	수용 세대수 (호)	수용 인구 (인)	평균 면적 (㎡)	최고 층수 (층)	용적률 (%)	비고
유형	블록명	규모							
합계			132,307	2,943	7,156	-	-	-	
아파트	A1	60㎡이하	31,205	734	1,835	85	25	200	기업형임대
	A2	60~85㎡	44,907	855	2,138	105	25	200	기업형임대
	A3	60㎡이하	35,620	838	2,095	85	25	200	기업형임대
	A4	60㎡이하	5,284	225	360	47	25	200	공공임대
	B1	60~85㎡	15,291	291	728	105	25	200	일반분양

다) 근린생활시설용지(제2종일반주거지역)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획내용	
-	Cn1	용도	허용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(라목 안마원 제외) -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(마목 총포판매소, 차목 장의사, 너목 제조업소, 더목 단란주점, 러목 안마시술소 제외)
			불허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
		규모	건폐율	○ 60% 이하
			용적률	○ 250% 이하
			높이	○ 5층 이하
		배치	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·통풍을 고려하여 배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「건축법」 및 「의왕시 건축조례」에 의한 기준이상으로 거리를 확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.
			건축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건축선(건축한계선)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「의왕시 건축조례」 별표3 (대지 안의 공지 기준)을 따른다.
		형태 및 외관	○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	
		기타	○ 기타 및 세부세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	

라) 상업시설용지(준주거지역)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획내용	
-	C1, C2	용도	허용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-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(라목 안마원 제외) -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(마목 충포판매소, 차목 장의사, 너목 제조업소, 더목 단란주점, 러목 안마시술소 제외) -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(나목 마권(馬券) 장외발매소·마권 전화투표소, 다목 경마장·경륜장·경정장·자동차 경기장, 마목 동식물원 제외) - 제7호 판매시설(가목 도매시장, 나목 소매시장 제외) - 제9호 의료시설(가목 정신병원·요양병원, 나목 격리병원·마약진료소, 장례식장 제외) - 제10호 교육연구시설(가목 학교 제외) - 제11호 노유자시설 - 제13호 운동시설(가목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, 나목 체육관, 다목 운동장 제외) - 제14호 업무시설(나목 오피스텔 제외) - 제24호 방송통신시설(나목 전신전화국, 라목 통신용시설 제외)
			불허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○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
		규모	건폐율	○ 70% 이하
			용적률	○ 350% 이하
			높이	○ 5층 이하
		배치	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·통풍을 고려하여 배치 ○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「건축법」 및 「의왕시 건축조례」에 의한 기준이상으로 거리를 확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.
			건축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축선(건축한계선)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○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「의왕시 건축조례」 별표3(대지 안의 공지 기준)을 따른다.
		형태 및 외관		○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
		기타		○ 기타 및 세부세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

마) 자족시설용지(준주거지역)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획내용	
-	S1	용도	허용용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주용도(건축물 연면적의 70% 이상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(나목 마권(馬券) 장외발매소·마권 전화투표소, 다목적마장·경륜장·경정장·자동차 경기장, 마목 동식물원 제외) ○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○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○ 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② 부용도(건축물 연면적의 30% 미만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(라목 안마원 제외) -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(마목 총포판매소, 차목 장의사, 너목 제조업소, 너목 단란주점, 러목 안마시술소 제외) - 제7호 판매시설(가목 도매시장, 나목 소매시장 제외) - 제9호 의료시설(가목 정신병원·요양병원, 나목 격리병원·마약진료소, 장례식장 제외) - 제10호 교육연구시설(가목 학교 제외) - 제11호 노유자시설 - 제13호 운동시설(가목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, 나목 체육관, 다목 운동장 제외) - 제14호 업무시설(나목 오피스텔 제외) - 제24호 방송통신시설(나목 전신전화국, 라목 통신용시설 제외) 	
			불허용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○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	
		규모	건폐율	○ 70% 이하
			용적률	○ 350% 이하
			높이	○ 5층 이하
		배치	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·통풍을 고려하여 배치 ○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「건축법」 및 「의왕시 건축조례」에 의한 기준이상으로 거리를 확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.
			건축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축선(건축한계선)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○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「의왕시 건축조례」 별표3(대지 안의 공지 기준)을 따른다.
		형태 및 외관	○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	
		기타	○ 기타 및 세부세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	

바) 공공시설용지 및 기타시설용지

■ 교육시설용지(제1종일반주거지역/제2종일반주거지역)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획내용		
-	E1, E2	용도	허용용도	E1 ○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-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 학교(초등학교) ○ 「유아교육법」 제9조에 의한 병설유치원	
			E2 ○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-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 학교(유치원) ○ 「영유아보육법」 제3조에 의한 어린이집(연면적 30% 미만)		
			불허용도	○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
		규모	건폐율	○ 60% 이하	
			용적률	E1	○ 250% 이하
				E2	○ 200% 이하
			높이	E1	○ 5층 이하
		E2		○ 4층 이하	
		배치	배치	○ 환경영향평가, 교육환경영향평가에 따라 교사동을 충분히 이격하여 소음 등으로부터 학교환경을 보호한다. ○ 교육시설은 가급적 남향 배치를 권장한다. ○ 교육시설은 생활권 내 오픈스페이스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방적인 형태의 배치를 권장한다. ○ 인접한 공동주택 및 공원 등과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건축 및 조경계획을 수립해야 한다.	
			건축선	○ 건축선(건축한계선)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○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「의왕시 건축조례」 별표3 (대지 안의 공지 기준)을 따른다.	
			형태 및 외관	○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	
	기타	○ 기타 및 세부세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			

■ 주유소용지(제1종일반주거지역)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획내용		
-	G1	용도	허용 용도	○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-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가목의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, 나목 액화석유 가스 충전소 -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 시행규칙 별표 13호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	
			불허용도	○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○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	
		규모	건폐율	○ 60% 이하	
			용적률	○ 200% 이하	
			높이	○ 4층 이하	
		배치	건축선	○ 건축선(건축한계선)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○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「의왕시 건축조례」 별표3 (대지 안의 공지 기준)을 따른다.	
			기타	○ 기타 및 세부세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	

■ 주차장용지(제2종일반주거지역/준주거지역)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획내용		
-	P1, P2	용도	허용 용도	P1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주차장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(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)에 한함. ○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(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1조의2 제1항(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) 적용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(라목 안마원 제외) -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(가목 공연장, 나목 종교집회장, 마목 총포 판매소, 차목 장의사, 카목 교습소·직업훈련소, 파목 골프연습장, 거목 다중 시설, 너목 제조업소, 더목 단란주점, 러목 안마시술소 제외) 	
				P2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주차장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(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)에 한함. ○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(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1조의2 제1항(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) 적용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(라목 안마원 제외) -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(마목 총포판매소, 차목 장의사, 너목 제조업소, 더목 단란주점, 러목 안마시술소 제외) - 제7호 판매시설(가목 도매시장, 나목 소매시장 제외) - 제13호 운동시설(가목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, 나목 체육관, 다목 운동장 제외) - 제14호 업무시설(나목 오피스텔 제외) 	
			불허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○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	
		규모	건폐율	○ 70% 이하	
			용적률	P1	○ 250% 이하
				P2	○ 350% 이하
		높이	○ 5층 이하		
		배치	건축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축선(건축한계선)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○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「의왕시 건축조례」 별표3 (대지 안의 공지 기준)을 따른다. 	
		형태 및 외관	○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		
		기타	○ 기타 및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		

3) 기타 및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

- 바. 용도지역 결정(변경)도 : 게재생략
- 사.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도 : 게재생략
- 아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: 게재생략

2.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

가. 전력공급계획에 관한 사항

- 한국전력공사 남군포변전소에서 공급예정

나. 도시가스공급계획에 관한 사항

- 삼천리 도시가스(주)에서 공급예정

다. 열공급계획에 관한 사항

-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 예정

라. 집단에너지 수요량 및 타당성 검토

- 집단에너지 수요량
 - 최대열부하 : 16.5Gcal/h, 열사용량 : 34,514Gcal/년, 열밀도 : 42.6Gcal/km².h
- 집단에너지 타당성 검토
 - 제4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(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-641호) 검토기준에 의거 본 사업지구의 집단에너지 도입기준을 검토한 결과 열밀도를 제외한 최대열부하 및 열사용량이 도입기준에 부적합

3. 방재계획

가. 하천재해

- 개발로 인한 소하천 신촌천의 유입 홍수량 증가분을 사업지구 내 영구저류지 설치를 통해 저감하고 하천수위를 고려한 단지계획고 설정

나. 내수대책

- 내수처리방식
 - 내수처리는 자연배수를 원칙으로 하며, 강우 시 저지대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
- 우수유출 저감
 - 빗물 침투시설 및 저류시설을 이용하여 우수유출 저감
 - 투수성포장재 사용으로 강우 시 우수의 지표면 흡수유도
- 재해저류지의 설치
 - 개발로 인한 홍수량 저감을 위하여 평시에는 공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중목적의 저류지 설치

다. 비탈면 붕괴 예방

- 개발사업에 따른 절성토면의 범면 발생구간에 대하여 사면안정공법 실시

라. 자연재해 중 사업지구에서 발생가능성이 높은 재해

- 지진대책

- 단지 내 대상시설물에 대하여는 각 시설별로 내진설계기준 적용
- 지진발생시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·녹지, 간선도로 등 오픈스페이스 확보
- 화재 및 산불대책
 - 공원, 녹지, 간선도로 등 충분한 오픈스페이스 확보를 통한 화재확대 방지하고 소방·구조활동 집결의 거점으로 활용

4.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: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-389호(2016. 6. 29)로 기 고시
5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·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

가. 편입 토지조서 :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-389호(2016. 6. 29)로 기 고시

나. 토지취득 방법 :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협의에 의한 취득 및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용 수용함

다.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: 존치 대상 없음

6.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

가.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 계획

- 사업시행자분 귀속 총괄

구 분	필 지 수	면 적 (㎡)	비 고
계	94	28,203	
구거	2	5,461	
도로	65	16,617	
유지	6	826	
하천	22	5,299	

- 소관청별 토지조서

- 국토교통부

연번	소재지	지번	지목	공부면적 (㎡)	편입면적 (㎡)	무상귀속 면적(㎡)	소유자	비고
계				14,523	10,173	10,173	-	
1	의왕시 삼동	525-1	도	1	1	1	국(국토교통부)	
2	의왕시 삼동	525-4	도	35	35	35	국(국토교통부)	
3	의왕시 삼동	552-2	천	97	97	97	국(국토교통부)	

연번	소재지	지번	지목	공부면적 (㎡)	편입면적 (㎡)	무상귀속 면적(㎡)	소유자	비고
4	의왕시 삼동	552-17	천	19	19	19	국(국토교통부)	
5	의왕시 초평동	588	천	900	900	900	국(국토교통부)	
6	의왕시 초평동	591	도	85	85	85	국(국토교통부)	
7	의왕시 초평동	591-2	도	26	26	26	국(국토교통부)	
8	의왕시 초평동	591-3	도	635	635	635	국(국토교통부)	
9	의왕시 초평동	591-4	도	11	11	11	국(국토교통부)	
10	의왕시 초평동	591-6	도	199	199	199	국(국토교통부)	
11	의왕시 초평동	591-7	도	404	404	404	국(국토교통부)	
12	의왕시 초평동	594	도	4362	16	16	국(국토교통부)	
13	의왕시 초평동	598	도	100	100	100	국(국토교통부)	
14	의왕시 초평동	598-2	도	83	83	83	국(국토교통부)	
15	의왕시 초평동	599	구	5460	5456	5,456	국(국토교통부)	
16	의왕시 초평동	602	도	382	382	382	국(국토교통부)	
17	의왕시 초평동	609	도	1724	1724	1,724	국(국토교통부)	

- 농림축산식품부

연번	소재지	지번	지목	공부면적 (㎡)	편입면적 (㎡)	무상귀속 면적(㎡)	소유자	비고
계				2,658	1,038	1,038	-	
1	의왕시 삼동	525	도	102	102	102	국(농림축산식품부)	
2	의왕시 삼동	525-2	도	79	79	79	국(농림축산식품부)	
3	의왕시 삼동	527-3	구	25	5	5	국(농림축산식품부)	
4	의왕시 초평동	588-5	천	782	782	782	국(농림축산식품부)	
5	의왕시 초평동	589-1	천	1651	51	51	국(농림축산식품부)	
6	의왕시 초평동	598-1	도	19	19	19	국(농림축산식품부)	

- 의왕시

연번	소재지	지번	지목	공부면적 (㎡)	편입면적 (㎡)	무상귀속 면적(㎡)	소유자	비고
계				23,224	16,992	16,992	-	
1	의왕시 삼동	481-5	도	3,554	1,539	1,539	의왕시	
2	의왕시 삼동	481-37	천	5	5	5	의왕시	
3	의왕시 삼동	481-43	도	57	57	57	의왕시	
4	의왕시 삼동	481-44	도	285	285	285	의왕시	
5	의왕시 삼동	482-10	도	203	203	203	의왕시	
6	의왕시 삼동	482-13	도	153	153	153	의왕시	
7	의왕시 삼동	482-14	도	430	430	430	의왕시	
8	의왕시 삼동	482-15	도	1,066	895	895	의왕시	

연번	소재지	지번	지목	공부면적 (㎡)	편입면적 (㎡)	무상귀속 면적(㎡)	소유자	비고
9	의왕시 삼동	483-9	도	34	23	23	의왕시	
10	의왕시 삼동	483-10	도	30	30	30	의왕시	
11	의왕시 삼동	483-16	도	68	68	68	의왕시	
12	의왕시 삼동	483-17	도	160	160	160	의왕시	
13	의왕시 삼동	483-19	도	260	217	217	의왕시	
14	의왕시 삼동	483-20	도	138	138	138	의왕시	
15	의왕시 삼동	483-29	도	184	184	184	의왕시	
16	의왕시 삼동	483-30	도	483	483	483	의왕시	
17	의왕시 삼동	491-8	도	2	2	2	의왕시	
18	의왕시 삼동	491-9	도	454	454	454	의왕시	
19	의왕시 삼동	491-12	도	6	6	6	의왕시	
20	의왕시 삼동	491-16	도	857	857	857	의왕시	
21	의왕시 삼동	491-17	도	175	165	165	의왕시	
22	의왕시 삼동	492-4	도	179	179	179	의왕시	
23	의왕시 삼동	493-1	도	12	12	12	의왕시	
24	의왕시 삼동	493-2	도	80	80	80	의왕시	
25	의왕시 삼동	494-4	도	45	45	45	의왕시	
26	의왕시 삼동	494-7	도	54	54	54	의왕시	
27	의왕시 삼동	494-8	도	441	441	441	의왕시	
28	의왕시 삼동	495-4	도	101	4	4	의왕시	
29	의왕시 삼동	500-8	도	64	6	6	의왕시	
30	의왕시 삼동	525-3	도	1	1	1	의왕시	
31	의왕시 삼동	527-11	도	9	9	9	의왕시	
32	의왕시 삼동	527-12	도	1	1	1	의왕시	
33	의왕시 삼동	527-13	도	88	80	80	의왕시	
34	의왕시 삼동	552-16	천	428	428	428	의왕시	
35	의왕시 초평동	5-3	도	35	35	35	의왕시	
36	의왕시 초평동	7-8	도	1,919	1,919	1,919	의왕시	
37	의왕시 초평동	8-4	천	2,759	378	378	의왕시	
38	의왕시 초평동	8-5	도	1,268	1,268	1,268	의왕시	
39	의왕시 초평동	8-7	도	1	1	1	의왕시	
40	의왕시 초평동	11-3	천	234	234	234	의왕시	
41	의왕시 초평동	12-2	유	162	162	162	의왕시	
42	의왕시 초평동	12-6	천	4	4	4	의왕시	
43	의왕시 초평동	12-7	천	21	21	21	의왕시	
44	의왕시 초평동	12-8	천	35	24	24	의왕시	
45	의왕시 초평동	12-10	천	178	178	178	의왕시	
46	의왕시 초평동	12-11	유	37	37	37	의왕시	

연번	소재지	지번	지목	공부면적 (㎡)	편입면적 (㎡)	무상귀속 면적(㎡)	소유자	비고
47	의왕시 초평동	12-12	유	105	105	105	의왕시	
48	의왕시 초평동	12-13	천	752	257	257	의왕시	
49	의왕시 초평동	12-14	유	211	72	72	의왕시	
50	의왕시 초평동	12-17	도	38	38	38	의왕시	
51	의왕시 초평동	12-18	도	489	489	489	의왕시	
52	의왕시 초평동	12-20	도	68	68	68	의왕시	
53	의왕시 초평동	13-1	천	36	36	36	의왕시	
54	의왕시 초평동	13-2	유	160	160	160	의왕시	
55	의왕시 초평동	14	천	566	566	566	의왕시	
56	의왕시 초평동	14-1	천	9	9	9	의왕시	
57	의왕시 초평동	14-2	천	70	70	70	의왕시	
58	의왕시 초평동	16-2	천	297	297	297	의왕시	
59	의왕시 초평동	19-14	도	125	125	125	의왕시	
60	의왕시 초평동	19-15	도	21	21	21	의왕시	
61	의왕시 초평동	19-16	도	218	218	218	의왕시	
62	의왕시 초평동	22	도	824	824	824	의왕시	
63	의왕시 초평동	25-26	천	331	331	331	의왕시	
64	의왕시 초평동	25-27	유	290	290	290	의왕시	
65	의왕시 초평동	25-43	천	342	342	342	의왕시	
66	의왕시 초평동	25-44	천	270	270	270	의왕시	
67	의왕시 초평동	25-45	도	1	1	1	의왕시	
68	의왕시 초평동	71-9	도	42	42	42	의왕시	
69	의왕시 초평동	253-8	도	711	11	11	의왕시	
70	의왕시 초평동	588-4	도	371	371	371	의왕시	
71	의왕시 초평동	산28-23	도	117	24	24	의왕시	

○ 대체시설(지방자치단체귀속분) 총괄

시설의 구분	면 적 (㎡)	비 고
소 계	174,130	-
도 로	65,551	- 25개 노선(보행자도로 7개 노선 포함) - 중복면적(하천:1,850㎡) 포함
공 원	46,205	- 소공원 1개소, 어린이공원 1개소, 근린공원 2개소 (유수지 면적 포함)
(유수지)	(4,711)	- 1개소(근린공원 2호내 설치)
녹 지	34,441	- 11개소(완충녹지 1개소, 경관녹지 10개소)
하 천	27,933	- 소하천 2개소 (신촌천, 금천천) - 중복면적(도로, 하천 : 1,850㎡) 제외

○ 대체시설

1) 도로

■ 도로 총괄표(보행자도로 포함)

류 별	합 계			1 류			2 류			3 류		
	노선 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 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 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 수	연장 (m)	면적 (㎡)
합 계	25	4,137	65,551	8	1,928	31,056	4	551	9,304	13	1,658	23,060
광 로	-	-	-	-	-	-	-	-	-	-	-	-
대 로	2	634	15,098	-	-	-	1	93	2,723	1	541	12,375
중 로	8	2,327	38,597	2	1,049	23,013	3	458	6,581	3	820	9,003
소 로	15	1,176	9,725	6	879	8,043	-	-	-	9	297	1,682
가각 및 버스정차대등	-	-	2,131	-	-	-	-	-	-	-	-	-

■ 도로 조서(보행자도로 포함)

구분	규 모				기 능	연 장 (m)	기 점	종 점	사 용 형 태	주요 경과 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신설	대로	2	1	32	보조간선 도로	93	초평동 50-1	대3-1	일반도로	-	-	
신설	대로	3	1	20'30	보조간선 도로	541	중1-101	초평동 256-6	일반도로	-	-	
기정	중로	1	101	20~26	보조간선 도로	1,190	대2-1	중3-102	일반도로	-	건교부 고시 제179호 (1998.6.10.)	지구 외
변경	중로	1	101	20~26	보조간선 도로	966	대2-1	초평동 481-5	일반도로	-		
신설	중로	1	1	23	집산도로	367	대3-1	초평동 78-3	일반도로	-	-	
신설	중로	1	2	23~26	집산도로	682	대3-2	중2-1	일반도로	-	-	
신설	중로	2	1	15.5	집산도로	272	대3-1	초평동 52-2	일반도로	-	-	
신설	중로	2	2	16	집산도로	162	대3-1	소3-6	일반도로	-	-	
신설	중로	2	3	16	집산도로	24	초평동 27-7	중3-1	일반도로	-	-	
기정	중로	3	102	12~14	집산도로	2,440	중1-101	초평동 (수원시계)	일반도로	-	의왕시 고시 제50호 (2004.11.29.)	지구 외
변경	중로	3	102	12~14	집산도로	2,123	초평동 256-6	초평동 (수원시계)	일반도로	-		
신설	중로	3	1	12	집산도로	480	대3-1	중2-2	일반도로	-	-	
신설	중로	3	2	12	집산도로	154	중1-1	초평동 93-9	일반도로	-	-	
신설	중로	3	3	12	집산도로	186	중1-1	초평동 산23-3	일반도로	-	-	
신설	소로	1	1	10	국지도로	358	중2-1	중2-1	일반도로	-	-	
신설	소로	1	2	10	국지도로	59	중2-1	소1-1	일반도로	-	-	

구분	규 모				기 능	연 장 (m)	기 점	중 점	사 용 형 태	주요 경과 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신설	소로	1	3	10	국지도로	111	소1-4	소1-2	일반도로	-	-	
신설	소로	1	4	10	국지도로	67	중2-1	소1-1	일반도로	-	-	
신설	소로	1	5	10	국지도로	141	중3-1	소1-6	일반도로	-	-	
신설	소로	1	6	10	국지도로	143	중3-1	소1-5	일반도로	-	-	
폐지	소로	2	187	8	국지도로	237	초평 동41-2	초평동 31-2	일반도로	-	의왕시 고시 제51호 (2005.8.16.)	
기정	소로	2	214	14~ 15	국지도로	412	소로2-160 초평동 산28-18	소로2-188 초평동92- 10	일반도로	-	의왕시 고시 50호 (2004.11.29.)	지구 외
변경	소로	2	214	14~ 15	국지도로	47	소로2-160 초평동 산28-18	초평동 산23-1	일반도로	-		
신설	소로	3	1	6	국지도로	13	소1-1	소3-3	일반도로	-	-	
신설	소로	3	2	6	국지도로	13	소1-1	소3-5	일반도로	-	-	
신설	소로	3	3	6	특수도로	10	소3-1	초평동 52-1	보행자 전용도로	-	-	
신설	소로	3	4	6	특수도로	29	소1-1	초평동 51-2	보행자 전용도로	-	-	
신설	소로	3	5	6	특수도로	10	소3-2	초평동 51-2	보행자 전용도로	-	-	
신설	소로	3	6	6	특수도로	35	소2-2	초평동 51-2	보행자 전용도로	-	-	
신설	소로	3	7	5	특수도로	15	중3-1	소1-5	보행자 전용도로	-	-	
신설	소로	3	8	5	특수도로	17	소1-5	초평동 16-7	보행자 전용도로	-	-	
신설	소로	3	9	6	특수도로	155	초평동 25-4	초평동 27-3	보행자 전용도로	-	-	

2) 공원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 적(m ²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 계				-	-	증) 46,205	46,205		
신설	1	초평1호 소공원	소공원	삼동 481-47 일원	-	증) 4,489	4,489		
신설	1	초평1호 어린이공원	어린이 공원	초평동 53-1 일원	-	증) 1,608	1,608		
신설	1	초평1호 근린공원	근린공원	초평동 55-3 일원	-	증) 25,874	25,874		
신설	2	초평2호 근린공원	근린공원	초평동 19-1 일원	-	증) 14,234	14,234	저류시설 1개소 (4,711m ²) 중복결정	

3) 녹지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적(m ²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 계				-	-	증) 34,441	34,441		
신설	1	녹지	완충녹지	초평동 25-25 일원	-	증) 2,451	2,451	-	
신설	1	녹지	경관녹지	초평동 52-1 일원	-	증) 336	336	-	
신설	2	녹지	경관녹지	초평동 51-1 일원	-	증) 1,807	1,807	-	
신설	3	녹지	경관녹지	초평동 52-2 일원	-	증) 425	425	-	
신설	4	녹지	경관녹지	초평동 54 일원	-	증) 3,413	3,413	-	
신설	5	녹지	경관녹지	초평동 55-7 일원	-	증) 1,144	1,144	-	
신설	6	녹지	경관녹지	초평동 76 일원	-	증) 3,197	3,197	-	
신설	7	녹지	경관녹지	초평동 63 일원	-	증) 9,449	9,449	-	
신설	8	녹지	경관녹지	초평동 25-54 일원	-	증) 10,193	10,193	-	
신설	9	녹지	경관녹지	초평동 16 일원	-	증) 831	831	-	
신설	10	녹지	경관녹지	초평동 25 일원	-	증) 1,195	1,195	-	

4) 하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		연장 (km)	폭원 (m)	면적 (m ²)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점	종점	주요 경과지					
합 계				-			2,524 (1,208)	-	70,575 (27,933)	-	
기정	14	신촌천	소하천	초평동 53-3	초평동 3-8	-	1,251	21~25	27,126 (19,700)	의왕시 고시 제2015-9호 (2015.1.23)	
변경	14	신촌천	소하천	초평동 53-3	초평동 3-8	-	1,251 (995)	21~25	27,562 (20,136)	의왕시 고시 제2015-9호 (2015.1.23)	
기정	15	금천천	소하천	삼동 552-20	초평동 278-6	-	1,273 (213)	33~60	43,001 (7,797)	의왕시 고시 제2015-9호 (2015.1.23)	

※ () 는 지구 내 편입 연장 및 면적임

5) 우수지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 설 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적(m ²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 계				-	-	증) 4,711	4,711	-	
신설	1	우수지	저류 시설	초평동 19-1일원	-	증) 4,711	4,711	-	

나.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

- 시행할 자 :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
- 시행 방법 :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사업으로 시행
-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: 의왕시장

7.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: 해당사항 없음

8.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

공급용도구분		공급면적 (㎡)	필지수	공급대상자	공급방법	공급가격	공급 시기	비고
주택 건설 용지	단독 주택	17,139	64	이주자택지 대상자	수의계약	기준면적 이하 : 이주자택지 공급단가 기준면적 초과분 : 감정가격	지구 계획 승인 후	
				협의양도인	수의계약	조성원가 110%		
				실수요자	추첨	감정가격		
	공동 주택	111,732	3	실수요자	자격제한	조성원가 / 감정가격 90%		
				공공 임대	60㎡ 이하	5,284		
	분양	15,291	1	실수요자	추첨	감정가격		
	근린생활시설	1,912	3	실수요자	경쟁입찰	낙찰가격		
기반 시설 용지	유치원	994	1	국가·지자체	수의계약	조성원가		
				실수요자	자격제한	낙찰가격		
	주차장	2,535	2	국가·지자체	수의계약	조성원가		
				실수요자	자격제한	낙찰가격		
판매 업무 시설 용지	상업시설	6,194	6	실수요자	경쟁입찰	낙찰가격		
	자족시설	38,174	4	국가·지자체	수의계약	조성원가		
실수요자				경쟁입찰	낙찰가격			
기타	주유소	1,552	1	협의양도자	제한경쟁	낙찰가격		
				실수요자	경쟁입찰	낙찰가격		
합 계		200,807	86	-	-	-	-	

※ 참고 : 「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」, 「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」, 「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」

※ 이주자택지대상자 공급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및 「한국토지주택공사 내규」에 의해 공급